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유산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유산 AI 정책 및 지능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국가유산AI전략팀을 신설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유산청의 정원 10명(5급 4명, 6급 5명, 7급 1명) 및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
하며, 2025년 국가유산청 정원감사 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디지털정보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감사담당관·디지털정보담당관 및 국가유산AI전략팀”으로, “학예연구관”을 “학예연구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8호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평가”를 “평가(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시스템에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문화유산정보시스템 및 국가유산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문화유산지리정보시스템”을 “국가유산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문화유산데이터”를 “국가유산데이터(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국가유산데이터 관리 및 행정정보체계 운영”으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국가유산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유산AI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

다.

1. 국가유산산업(「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 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산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국가유산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4. 국가유산산업 조사 등 국가유산산업 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9. 디지털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0. 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라 한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1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에 관한 사업 추진
1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15. 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18.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국가유산정보시스템 및 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무형유산정책과·지정심사과·전승지원과 및 조사연구기록과”를 “무형유산정책과·무형유산예능과·무형유산기술과 및 무형유산지식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이 조에서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 전승지원금 제도의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6.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심사과장”을 “무형유산예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전통예능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사항 총괄”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국가무형유산”을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분과위원회”를 “전통예능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부터 제9호(종전의 제8호)까지 중 “국가무형유산”을 각각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통예능분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취소·해제·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등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13. 전통예능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 등재된 종목에 대한 행사 지원 및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통예능분야의 보전·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5. 전통예능분야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승지원과장”을 “무형유산기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무형유산등 공개 지원”을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취소·해제·보호·관리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3호) 중 “국가무형유산등”을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10호) 중 “무형유산”을 “전통기술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중전의 제11호) 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를 “전통기술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으로,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통기술분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전통기술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8.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등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취소·해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위원회 전통기술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4. 전통기술분야의 보전·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연구기록과장”을 “무형유산지식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 제10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을 “무형유산위원회 전통 지식분과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9호) 중 “기록물 열람실”을 “기록관”으로 한다.

1. 전통지식분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부터 마목 그리고 사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취소·해제·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취소·해제에 관한 사항
 6.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0.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9. 무형유산 기록화 및 콘텐츠 제작·보급
 7.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8.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등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13. 전통지식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 등재된 종목에 대한 행사 지원 및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통지식분야의 보전·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5. 전통지식분야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제28조제3항 중 “6급”을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으로 한다.

제13장(제3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한시정원

제31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별표 3 중 총계 “345”를 “351”로, 일반직 계 “344”를 “350”으로 하며,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4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를 신설, 행정사무관 “18”을 “19”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4”를 “23”으로, 전산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 “21”을 “2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9”를 “1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54”를 “360”으로, 일반직 계 “353”을 “359”로 하며,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4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를 신설, 행정사무관 “18”을 “19”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0”을 “29”로, 전산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 “21”을 “23”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0”을 “12”로 한다.

별표 8 행정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다음에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 방호서기보 “8”을 “7”로 한다.

별표 11 행정주사보 3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2 행정주사보 3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 중 “국가유산산업육성팀, 건축유산팀”을 “건축유산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건축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건축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장이 보좌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민속유산팀장, 고도보존육성팀장 및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민속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근현대유산과장이, 고도보존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연유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5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6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6
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
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
가유산AI전략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유산AI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유산AI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분장한다.

[별표 16]

국가유산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1조 관련)

제31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시설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u>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법무감사담당관 · 디지털정보담당관</u> 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u>학예연구관</u> 으로 보한다.	② ----- <u>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법무감사담당관 · 디지털정보담당관</u> 및 <u>국가유산AI전략팀</u> ----- ----- <u>학예연구관</u> 으로, 팀장은 <u>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u>여성정책</u> 에 관한 사항	18. <u>성평등 정책</u> -----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디지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 기록화 업무의 총괄 · 조정 및 <u>평가</u>	2. ----- ----- <u>평가(국가유산기</u>

	<u>록정보자원시스템에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 <u>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문화유산정보시스템 및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및 관리</u>	7. <u>국가유산청</u> ----- ----- ----- --
8. ~ 17. (생략)	8. ~ 17. (현행과 같음)
18. <u>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u>	18. <u>국가유산</u> ----- -----
19. <u>문화유산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u>	19. <u>국가유산지리정보시스템</u> -----
20. · 21. (생략)	20. · 21. (현행과 같음)
22. <u>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저장·가공·표준화·유통 등에 관한 사항 총괄</u>	22. <u>국가유산데이터(국가유산 기록정보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23. <u>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조정 총괄</u>	23. <u>국가유산데이터 관리 및 행정정보체계 운영</u> ----- ----- <u>국가유산지능정보화</u> ----- -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u><신설></u>	⑦ <u>국가유산AI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u> 1. <u>국가유산산업(「국가유산기</u>

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
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
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 정책 수립·조정 및 시
행

2. 국가유산산업 관련 민관 협
력체계 구축

3. 국가유산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4. 국가유산산업 조사 등 국가
유산산업 통계 수집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국가연
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정

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9. 디지털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조정 및 총괄

10. 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가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라 한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1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에 관한 사업 추진

1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15. 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국가유산산업육성팀)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차장 밑에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1명을 둔다.

②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가유산산업(「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18.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국가유산정보시스템 및 국가유산기록정보자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삭 제>

육성 정책 수립·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산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국가유산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4. 국가유산산업 조사 등 국가유산산업 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9.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10. 국가유산산업 분야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한 국

<u>가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u> <u>가공·유통·활용 등 관련 사</u> <u>업의 추진</u>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항 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 츠(이하 이 항에서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라 한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총괄 1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 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에 관한 사업 추진 1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 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15. 디지털문화유산센터의 건 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 용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 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의 확인·점검 제10조(무형유산국) ① (생 략)	제10조(무형유산국) ① (현행과 같음)
---	------------------------------------

② 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 · 지정심사과 · 전승지원과 및 조사연구기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신설>

<신설>

15. · 16. (생략)

④ 지정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 취소 · 해제 ·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 무형유산정책과 · 무형유산예능과 · 무형유산기술과 및 무형유산지식과-----

-----.

③ -----
-----.

1. ~ 14. (현행과 같음)

15.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이 조에서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 전승지원금 제도의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6.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17. · 18.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④ 무형유산예능과장-----
-----.

1. 전통예능분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2.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취소·해제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2.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취소·해제·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통예능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 사항
4.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
5. -----
- 전통예능분과위원회---
6.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
7.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
8.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
9.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
10.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등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9.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
호무형유산(이하 이 항에서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
전승지원금 제도의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등 공개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
산등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
원

13. 전통예능분야 인류무형문
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
등재된 종목에 대한 행사 지
원 및 활용·홍보에 관한 사
항

14. 전통예능분야의 보전·전
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삭 제>

15. 전통예능분야 전승자의 창
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⑤ 무형유산기술과장-----
-----.

1. 전통기술분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
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의 지정·취소·해제·보호·
관리 및 활용-----

<신 설>

- 3.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
- 4.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공연 및 전시 지원
- 5. 국가무형유산등 경연대회 및
종목별 전승단체 합동공연 지
원
- 6.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지원시
스템의 구축·운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3. 전통기술분야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
한 사항

- 12.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
산등 ---

- 4.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
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 취소·해제에 관한 사항

- 5. 무형유산위원회 전통기술분
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
에 관한 사항

- 7.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 8.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 9.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
명 발급에 관한 사항

- 10.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
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

<신 설>

7. ~ 9. (생 략)

10.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11.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종목에 대한 행사 지원 및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⑥ 조사연구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

<신 설>

한 사항

11.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등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6. ~ 18.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5. 전통기술분야 -----
-

13. 전통기술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 -----

14. 전통기술분야의 보전·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⑥ 무형유산지식과장-----
-----.

1. 전통지식분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부터 마목 그리고 사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취소·해제·보호·

<u><신 설></u>	<u>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u><신 설></u>	3. <u>전통지식분야 국가긴급보호 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u>
2. ~ 4. (생략)	4. <u>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취소·해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6. ~ 18.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u>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u>	19. <u>무형유산 기록화 및 콘텐츠 제작·보급</u>
<u><신 설></u>	5. <u>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위원회의 운영</u>----- -----
6. (생략)	6. <u>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u>
7. <u>국가무형유산 공개 점검에 관한 사항</u>	20. (현행 제6호와 같음)
8. <u>무형유산 콘텐츠의 제작·보급</u>	7. <u>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8. <u>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u>
	9. <u>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u>

<u><신 설></u>	<u>명 발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0. <u>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1. <u>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등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2. <u>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자 주관 행사의 지원</u>
<u><신 설></u>	13. <u>전통지식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 등재된 종목에 대한 행사 지원 및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4. <u>전통지식분야의 보전·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u>
<u><신 설></u>	15. <u>전통지식분야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u>
9. 무형유산 <u>기록물 열람실</u>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	21. ----- - <u>기록관</u> ---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③ -----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 설>

<신 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건축유산팀, 민속유산팀, 고도보존육성팀 및 지질유산팀은 각각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 6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
----.

제13장 한시정원

제31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건축유산팀 -----

-----.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운영지원과장이 보좌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건축유산팀장, 민속유산팀장, 고도보존육성팀장 및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건축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장이, 민속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근현대유산과장이, 고도보존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연유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

건축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건축유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장이 보좌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민속유산팀장, 고도보존육성팀장 및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민속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근현대유산과장이, 고도보존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연유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6호 국가
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6호 국가
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
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
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
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
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
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
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사서사
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 행정주사·
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
·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
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
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0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20

26년 12월 31일-----
2027년 1월 1일 -----

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
학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 ·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	-----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학예	-----
연구사 5명, 행정서기 · 공업서	-----
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345</u>	<u>351</u>	+6
일반직 계	.		.	.	
	.		.	.	
			<u>344</u>	<u>350</u>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	.	
	.		.	.	
			<신 설>	<u>1</u>	+1
행정사무관	.		.	.	
	.		.	.	
			<u>18</u>	<u>19</u>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24</u>	<u>23</u>	-1
	.		.	.	
	.		.	.	

전산사무관	<u>4</u>	<u>5</u>	+1
행정주사	<u>21</u>	<u>23</u>	+2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u>9</u>	<u>11</u>	+2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	·	·	
·	·	·	

[별표 4]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54</u>	• <u>360</u>	+6
일반직 계	• • <u>353</u>	• • <u>359</u>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 <u><신 설></u>	• • <u>1</u>	+1
행정사무관	• • <u>18</u>	• • <u>19</u>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 • <u>30</u>	• • <u>29</u>	-1
전산사무관	• • <u>4</u>	• • <u>5</u>	+1

행정주사 • •	<u>21</u> • •	<u>23</u> • •	+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 •	<u>10</u> • •	<u>12</u> • •	+2

[별표 8]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신 설></u>	<u>1</u>	+1
방호서기보	<u>8</u>	<u>7</u>	-1
•	•	•	
•	•	•	

[별표 11]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u> <u>주사보 · 시설주사보</u> 또는 <u>전산주사보</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u> <u>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12]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 •	• • <u><신 설></u> <u>1</u> • •	• • <u>1</u> <u><삭 제></u> • •	+1 -1